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전병주 부위원장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‘2022 개정 교육과정’의 확대 시행으로 2025학년도부터 중학교 등에서 시행되는 기존의 자유학기(년)제가 자유학기제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했습니다.

□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의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, 자유학기제의 영역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

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도록
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습니다.

□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.

안 제2조에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을

‘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’ 에서 ‘한 학기’ 로 변경하고,
안 제5조에 교육감이 지역사회 또는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
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
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.

□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
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

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
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